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7월 16일 윤종균의원 등 2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7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8.2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4.9.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원안가결)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4.9.26)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윤종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 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차선이탈을 알려주는 장치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돌진 사고가 잇따르며 차량 급발진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현준)

1.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 장치 추가(안 제43조의3)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등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u>자동차 운행 안전장치</u> 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u>자동차 운행 안전장치</u> 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① ----- ----- <u>예방 및 원인 파악</u> ----- ----- <u>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u> ----- ----- -----. ② ----- <u>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43조의3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 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33조의18¹⁾은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의 확대를 권고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안전장치로 ①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②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제동 또는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차량 스스로 제동 또는 제어하는 장치, ③자동차의 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 운전자의 시계(視界)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④그 밖에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2년 12월 강릉 교통사고 등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급발진²⁾³⁾ 의심 사고 신고건수는 2015년 이후 총 340건이나 급발진으로 공식 인정된 건수는 없음.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3조의18(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2.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제동 또는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차량 스스로 제동 또는 제어하는 장치
3. 자동차의 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 운전자의 시계(視界)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4. 그 밖에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2) 급발진이란 정지 상태의 또는 저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고,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함.

3) 국토교통부는 급발진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 판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급발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급발진이 확인된 사례가 없으며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법률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 건수〉

(단위: 건)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계
50	57	58	39	33	25	39	15	24	340

※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자가 ‘급발진’ 의견으로 신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실제 급발진 발생 여부를 의미하지 않음

* ('15년) 사고기록장치 장착 시 기준 준수 필요(국토부령)

자료: 국토교통부

급발진 의심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제21대국회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EDR)⁴⁾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법률 제20298호, 2025. 2. 14. 시행예정)하였음.

그리고 202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페달블랙박스 설치에 관한 요구가 제기⁵⁾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페달영상기록장치(페달블랙박스)의 옵션화를 지속적으로 권고 중에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해당 장치 부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최근 증가하는 급발진 의심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

4)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5)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4. 2. 29.

자동차제작사에 페달용 블랙박스나 제동압력에 대한 표시장치 설치를 적극 권고할 것

악하는 데 기여하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동차 사고 피해 보상금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일반 블랙박스(전·후방블랙박스)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 간 분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 보험회사의 자발적인 참여 유인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⁶⁾ 페달영상기록 장치의 경우 급발진 여부 판단 외의 다른 역할을 기대할 수 없어 보험회사가 보험료 할인을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보험료 할인율이 크지 않다면 법률상의 권고규정만으로는 당초 의도했던 입법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다.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최근 자동차 돌진 사고로 인해 대형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한편, 사고원인으로서 운전자 과실 또는 자동차 결함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페달 부분 영상확인장치(페달 블랙박스)는 신속한 사고원인 분석·파악 등에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사고원인 규명 관련 운전자와 제조사 간 갈등을 조기 해소하고, 조속히 피해를 배상함으로써 사회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에

6) 현재 일반블랙박스에 대해서는 11개 보험사에서 특약을 마련하여 할인을 적용중임.

페달 블랙박스 등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포함하는 데에 동의함.

2) 손해보험협회

페달블랙박스 할인특약 도입은 할인특약 취지와 일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할인율 산출 통계가 없어 할인 특약 도입 어려움이 있음.

다만, 할인특약 도입 시기를 페달블랙박스 관련 통계가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어 할인율 산출이 가능한 시점 이후로 정할 경우에는 일부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게다가, 사고기록장치(EDR) 등 기존 유사시스템을 장착한 소비자와의 역차별 등을 고려할 경우 페달 블랙박스 할인 특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다만, 운전자의 비의도적 가속에 의한 지속적인 교통사고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중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개발시 할인특약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함.

시행일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 추가에 대한 시행은 가능하겠으나, 개정 법률안에 따라 할인 권고는 시행되더라도 실제 보험사가 준비과정을 거쳐 특약 상품이 출시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문진석)

동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 의결

[붙임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 중 “예방”을 “예방 및 원인 파악”으로,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u>자동차 운행 안전장치</u> 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다.	① ----- ----- <u>예방 및 원인 파악</u> ----- ----- <u>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u> ----- ----- -----.
② 제1항에 따른 <u>자동차 운행 안전장치</u> 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u>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u> ----- -----.